

特許專擔部署의 組織과 運營

特許 專擔部署의 意義·組織·業務分掌

I, 特許專擔部署의 意義

1. 特許專擔部署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기업들은 特許戰略을 기업의 기본경영전략으로 하여 기업경영의 방향을 轉換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기술개발과 누적기술의 토착화에 따른 國際競爭力의 강화 輸出環境을 打開할 수 있는 기본전략으로 삼을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大部分의 企業들이 특허문제의 해심을 파악하지 못한채 이를 疏忽히 취급하고 있어 심지어는 유용한 기술이나 특허가 제대로 蓄積, 活用되지 못하고 사멸되고 마는 예도 허다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企業內에 특허전담부서를 두기는 커녕 특허전담요원조차 두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막상 기업의 第1級에 속하는 중요업무가 관련부서의 雜務로서 취급처리되고 있던 때도 있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특허관리업무를 他業務와 兼하여서 담당자에게 任務賦與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내에선 아무도 特許問題에 精通할 수가 없었고 또한 특허 문제를 정확히 處理할 수 없었기 때문에 特許가 기업의 유용한 經營上의 武器로 活用되지 못하는 事例가 허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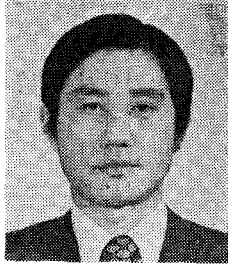
이제까지 特許專擔部署를 두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특허관리를 하고 있는 類型은 다음과 같이 指摘할 수 있다.

① 企劃室(企劃部)

- ② 調查部(調查課)
 - ③ 開發部(開發課)
 - ④ 研究室 또는 中央研究所 등 研究機關
 - ⑤ 販賣促進部(主로 商標, 意匠管理의 경우 또는 宣傳部)
 - ⑥ 디자인部(主로 意匠의 경우)
 - ⑦ 總務部(總務課)
 - ⑧ 營業部(販賣課)
 - ⑨ 서울事務所 또는 서울市內營業所(本社가 地方 또는 郊外에 있는 경우)
 - ⑩ 財務部 또는 管財部(管財課)
 - ⑪ 技術管理部
 - ⑫ 生産管理部
 - ⑬ 品質管理部
 - ⑭ 法務課(法規課) 등에서 나누어 管理하고 있었으며 어떤 企業은 各事業部(또는 事業本部)의 企劃課등에서 사업부별로 따로 따로 취급하거나 工業所有權을 3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각관련부서가 각각 特許와 實用新案, 意匠 및 商標를 따로 따로 관리하며, 輸出과 內需産業을 겸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수출품에 대한 특허관리는 무역부 등에서, 內需用에 대한 특허관리는 國內販賣部 등에서 각각 管掌하고, 심지어 어느 기업은 當初의 담당자의 부서가 바뀔때마다 담당자에 따라 이 部署 저 部署로 특허관리업무가 따라 다니게 되는 例도 비일비재하였다.
- 이와 같은 無秩序한 관리는 특허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뿐더러 有能한 專門要員을 양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原因이 되며 각 관련부서에 특허정보를 適期에 供給하지 못하

實務(1)

중심으로



金允培

〈辨理士〉

고 기업내의 工業所有權問題를 체계화시켜 정리
집약 분석하여 企業經營에 이를 活用하지 못하
므로서 企業의 意思決定에 特許문제가 거의 活
用되지 못하는 愚를 犯하게 되었다.

2. 企業內 特許情報流通의 集中單一化

기업내에서 특허관리업무를 한 곳에 集中專擔
시킬 수 있으면 기업이 保有活用 할 수 있는 관
계정보를 適時에 各관련부서에 供給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企業經營활동을 圓滑히 수
행케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諸情報, 이를테
면, 각종특허권리의 변동상황이 쉽게 파악되고
특허기술문제가 정확히 蒐集·分析·評價된 후
관련부서에 전달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分析評
價된 유용한 정보가 各관련부서를 通하여 企業의
意思決定에 反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企業이 必要로 하는 기
업내에 특허관리와 함께 특허정보의 流通體系를
말아 管理하는 조직의 出現이라 하겠다.

3. 特許專擔部署의 意義

특허관리에는 ① 專門性 ② 機密性 ③ 迅速性
등이 필요되나 기업내에서 發生되는 특허문제를
따로 設置되는 特許專擔部署에서 취급하지 않고
일반관리부서에서 散發적으로 맡아 처리하게 되
면 위와 같은 특허관리의 요건을 상실케 되어
所期의 성과를 期待할 수 없게 되는데,

첫째, 전문성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

論壇解說

目次

- I. 特許專擔部署의 意義
- II. 特許專擔部署의 組織과 業務分掌
- III. 特許專擔部署의 機能
- IV. 特許專擔要員 養成
- V. 特許專擔部署의 運營要領
〈고딕은 이번호, 평조는 다음호〉

하는 특허관리업무가 非專門家에 의하여 다루어
짐에 따라 重要한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있다.

둘째, 機密保持에 있어서 특허문제는 일반적
으로 企業經營의 최고급기밀에 속하는 것이 많
은데 이를 일정한 專擔部署의 要員이 擔當하지
않고 他業務를 취급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맡아
취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保安維持가 어려워 심
지어는 企業경영상 좋은 발명이 管理疏忽로 권리
취득전에 漏泄되어 公知技術化되는 결점이 있다.

셋째, 迅速성에 있어서 특허관리에서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技術의創作에 대해서
新規性を 보장받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발명이
라도 그 내용이 공지된 以後에는 아무런 법적보
호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新規
性を 維持하기 위해서는 특허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迅速한 처리가 요구되는바 專擔要員이 아
닌 兼職자가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업무처리
가 지연될 可能性이 있어 애써 이룩해 놓은 개
발기술이 獨占權을 얻지못해 死藏되고 마는 수
가 있다.

이와 같이 特許管理는 專門要員에 의하여 신
속히 그리고 隱密히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를 위해서는 他部署의 業務와는 독립된 특허전
담부서가 설치되어 특허전담부서의 전문요원에
依해서 特許管理業務가 수행되어야 함은 더 말
할 나위가 없다.

4. 最高經營者의 特別參謀 役割

특허문제를 한군데에 모아 관리하도록 설치되

는 特許專擔部署는 일반특허업무를 관리함과 아울러 工業所有權問題와 技術販賣業務에 관한 의 사결정에 신속히 參與・補助케 하므로써 工業所有權과 技術販賣業務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부 中小企業등 비교적 소규모 업체의 경우 당장 取扱할 相關업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특허전담부서만을 設置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公營소유권과 密接한 관련이 있는 업무들을 統合하므로써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한 效果를 거둘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턱대고 전담부서를 新設하는 것만이 能事가 아님을 認識하여 既存機構를 發展的으로 整理改編하는 方案도 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

II. 特許專擔部署의 組織과 業務分掌

1. 特許專擔部署의 地位

기업내에 설치되는 특허전담부서는 그 業務의 特殊性에 독립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직속기구하에 隸屬시키거나 법무관계부서 또는 研究開發部署內에 두는 것이 適當하다.

이는 특허관리업무의 固有한 업무수행能樣 때문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特許管理에 있어서의 특허권리 관리와 특허정보관리의 兩側面에서 考察해 보면

첫째, 特許權利管理의 側面에 있어서 기업내에 現實的으로 기획실 기능을 가진 部署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자의 一級參謀部署인 기획부서내에 특허전담부서를 두어 가급적이면 業務의 獨立性을 維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특허정보관리의 側面에 있어서 特許情報流通體系의 特殊性으로 미루어 보아 特許專擔部署는 研究開發部署內에 설치하여 기업의 기술 발전에 특허관리가 效率的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組織體制를 갖추 必要가 있다.

한편 特許專擔部署는 부서고유의 업무수행과 함께 최고경영자의 特別參謀로서의 機能까지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特許專擔部署를 최고경영자의 特別參謀로서의 任務遂行과 아울러 별도로 설치되는 職務發明管理(審査) 委員會의 사무국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특허전담부서는 法律이나 財産管理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규모 조직체계하의 法務관계부서내에 들 수도 있다.

2. 特許專擔部署의 構成과 業務分掌

특허전담부서에는 部署長을 포함하여 特許權利管理專擔要員, 特許情報管理專擔要員, 外國問題專擔要員 및 職務發明管理委員會의 幹事要員 등을 두되 이들은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유능한 요원으로 充當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서장은 부서 내의 일반업무를 統轄하는 이외에 최고 경영자의 特別參謀로서의 機能을 수행하고 한편으로는 기업내 職務發明管理(審査) 委員會의 幹事要員으로서의 任務를 수행하되 직무발명관리위원회 운영을 사실상 調整리드하는 位置에서 게 되는 것이다.

특허권리관리전담위원은 특허문제를 特히 기술분과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법률문제의 側面에서 취급하는 요원으로서, 이를테면 특허출원업무, 특허등록업무, 특허심판관리업무, 특허권감시업무 및 특허분쟁관리업무를 管掌하게 되지만 이러한 分野의 실무를 취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擔當하는 것이 아니라 그 基本指針과 重要事項에 대한 판단만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特許出願, 登錄 및 審判節次 등의 業務는 외부의 전문가인 辨理士 등에게 委任하고 정작 특허권리전담위원은 新開發技術에 대한 출원기준을 정하는 문제와 出願時期를 결정하는 등 政策的인 業務를 수행해야 하는데 업무량에 따라 特許・實用新案擔當要員, 意匠擔當要員 및 商標擔當要員으로 細分할 수도 있다.

特許情報管理專擔要員은 특허공보감시(이의신청)업무, 특허정보관리업무, 기술관독업무 및 기업의 "THINK TANK"로서의 技術圖書館의 관리업무 등을 管掌한다.

外國問題專擔要員은 기술도입업무, 외국에의 특허출원업무 및 해외시장에서의 기술관리업무 등을 管掌한다.

職務發明管理委員會의 幹事要員은 직무발명관리위원회의 사무국기능 및 社內特許關係教育業務등을 나누어 管掌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特許專擔部署의 任務

特許專擔部署는 최고경영자의 工業所有權을 포함한 知的所有權에 관한 特別參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公業소유권에 관한 一切의 절차, 이를 테면 出願의 대상이 되는 發明을 選定하는 業務로부터 출원, 심사 및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一聯의 권리설정업무와 이에 따른 특허권사후관리업무, 기업내에서 保有하고 있는 각종 工業所有權을 對内外에 技術로서 販賣(Licensing)하는 업무와 외국에의 特許·商標出願業務, 企業內 관련부서에서 필요로하는 각종 특허권리 및 특허기술정보를 관리하는 業務, 他人의 特許出願에 대한 이의신청과 특허권을 監視하는 業務, 特許紛爭에 따르는 특허심판과 特許訴訟業務, 職務發明管理(審査)委員會의 事務(幹事) 기능과 기업내의 "THINK TANK"로서의 도서관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을 未來指向의 것으로 이끌어 주는 任務를 수행한다. <계속>

本會 新刊 案內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부록 : 누구나 발명인이 될 수 있다

— 발명의 발상기법 중심 —

가 격 : 3,000원

판매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

(案) 發明振興事業 (內)

特許廳과 本會는 發明振興事業을 積極推進하여 登錄된 權利가 企業化됨으로써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하고자 다음과 같은 事業을 展開하고 있으나 많은 參與바랍니다.

◎ 事業內容 ◎

- ◎ 發明獎勵館의 發明品 無料展示 및 企業化 旋轉
 - ◎ 優秀發明 試作品 製作 支援
 - ◎ 優秀發明者, 發明有功者, 優秀特許管理 企業 選定表彰
 - ◎ 海外 展示出品의 積極 支援
 - ◎ 海外 出願에 對한 補助金 支援
 - ◎ 優秀發明의 金融支援 推薦
 - 創業資金支援 推薦(45歲 未滿)
 - 企業化資金 投·融資 推薦
 - ◎ 發明의 保護 및 紛爭 仲裁
 - ◎ 發明特許品 流通販賣展示會 開催
 - ◎ 企業과 發明人 結緣(申請接受)
 -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 住所 및 電話番號
 - 公告, 登錄番號 및 日字
 - 發明考案의 명칭을 적어 보낼 것.
-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 바랍니다.

韓國發明特許協會 캠페인

질서는 나라자랑 친절은 나의자랑
이웃끼리 나눈온정 밝아오는 우리사회
정직앞에 불신없고 공정앞에 불평없다
에너지는 국력이다 아껴써서 애국하자